



안전보건공단-모기업과 함께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주요 내용 안내

※ 아래 내용은 '24년도 사업 내용으로, '25년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

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

- ☑ 모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* 소요비용 지원(모기업 30% : 정부 70%)
- * 컨설팅 및 세미나, 안전보건물품 지원 등 안전보건 활동과제
- **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음

'24년 정부지원 예산(안):100억원(잠정)



매칭지원 개요

- ☑ 중소규모 협력업체 등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, 맞춤형 안전보건활동을 정부와 모기업이 매칭하여 분담 지원



지원 내용

- ☑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억원 한도(정부 지원금 기준) 분담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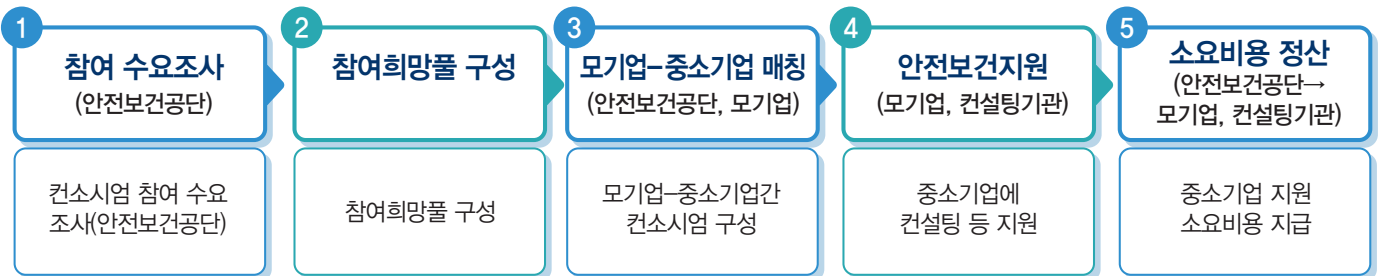
컨설팅 과제 중소기업 1개소 당 최고 2,000만원 한도 (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까지)로 지원

안전보건활동과제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로 지원

※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음(정부와 모기업이 전액 부담)



추진절차



사업문의

사업문의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 **이메일** jmch94@kosha.or.kr **팩스** 052-703-0314

문의처 ☑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 052-7030-631,635

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,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.





지원분야	세부내용
과제 1 위험성평가 기법의전수	☑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•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유해·위험요인 파악 •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 등 • 위험성평가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 • KRAS(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) 사용법 및 시현 • 위험성평가 연계 TBM 활용법 등
과제 2 3대사고유형· 8대위험요인	☑ 중소기업 중대재해 취약분야(3대사고유형·8대요인) 중점으로 유해·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지원 • 추락사다리·지붕·고소작업대·비계, 끼임방호장치·LOTO, 부딪힘혼재작업· 충돌방지장치
과제 3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	☑ 사업장의 폭발위험(인화성·분진 등)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개선대책 제시(폭발위험장소 구분 등) • ① 공정설계도서 파악 ② 공정조사(누출원의 종류, 수, 위치) ③ 누출원 계산 ④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⑤ 방폭전기기기 선정 및 관리 ⑥ 폭발위험장소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등
과제 4 화학물질 위험성평가	☑ 화학물질(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)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• ① 공정선정 ②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③ 노출수준 빈도 결정 ④ 유해성 강도 결정 ⑤ 위험성 계산·결정 ⑥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⑦ 예방조치 실행 등
과제 5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	☑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/부서/라인/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•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(공정별) ③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(설문지) ④ 유해요인조사 증상조사표 (통계) ⑤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작성 ⑥ 작업환경 개선 실시 ⑦ 유해성 주지 (교육) 및 조사방법 교육 등
과제 6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	☑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, 유해가스 측정 등 • ① 밀폐공간 조사 ② 밀폐공간프로그램 수립절차 ③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④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대책 ⑤ 보호구 ⑥ 밀폐공간 표지부착 및 교육 등
과제 7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	☑ 위험성평가 중심의 체계구축 평가 및 개선대책 제시 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요소 *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
각 과제별 포함 실태 컨설팅 유해 위험요인 교육	☑ 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 교육 등





첨부2_안전보건활동 세부내용

- ☑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이외에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안전보건 활동과제
(사업비 정산 : 총 소요비용의 70%를 공단 → 모기업에 정산·입금)



1 안전보건 세미나(간담회, 포럼 등)

- 1)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,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
- 2) 대상 :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중소기업 CEO, 근로자 등
- 3) 예산지원 범위 : ① 장소 임차료, ② 강사료(여비 포함), ③ 안전보건 홍보물 (참석자 당 1개), ④ 세미나 물품(현수막, 다과,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(임차), 필기류 등) 등

2 안전보건 캠페인

- 1)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, ②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관련 등
- 2) 대상 :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중소기업 CEO, 근로자 등
- 3) 예산지원 범위 : 캠페인 필요 물품(현수막, 피켓 등) 등

3 안전보건 물품

지원품목

- 1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①항3호에 따른 개인보호구(안전인증 대상품) 등
 - ① 안전모, ② 안전화, ③ 안전장갑, ④ 방진마스크, ⑤ 방독마스크, ⑥ 송기(送氣) 마스크,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, ⑧ 보호복, ⑨ 안전대, ⑩ 보안경, ⑪ 용접용 보안면,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, ⑬ 폭염대비 예방물품(쿨-키트), ⑭ 방한키트
- 2) ① 자동제세동기(AED), ② 가스농도측정기, ③ 산소농도측정기, ④ 공기치환용 환기팬, ⑤ 검전기, ⑥ 접지저항측정기, ⑦ 절연저항측정기, ⑧ 클램프미터, ⑨ 만능회로측정기, ⑩ 열화상카메라, ⑪ 누전차단시험기, ⑫ 소음측정기, ⑬ 혈압계, ⑭ 조도계, ⑮ 위험물보관저장설비
- 3) 안전보건표지(스티커 등), 소화기 등

지원대상 사업 참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

예산지원 범위

- 지원품목 1) : 1. 소모품(방진마스크, 보호복)의 경우 근로자 1명 당 3개월 수량(60개 내외),
2. 안전모·안전화·안전장갑은 근로자 1명 당 1개 (단, 쿨-키트는 근로자 1명당 5개 이하)
3. 그 외 품목은 작업조건(공정)별에 따라 근로자 1명 당 1개 (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)

지원품목 2) : 중소기업 당 1대

- 단, 고정설치형의 가스농도측정기·산소농도측정기, 공기치환용 환기팬, 위험물보관저장설비는 필요공정 수량만큼 지원하되, 지원기업 당 최대 3대 이하(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제출)
- 개인 휴대형 가스농도측정기, 산소농도측정기는 필요 근로자수 만큼 지원 (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)

지원품목 3) : 중소기업 당 필요수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

첨부2_안전보건활동 세부내용

4 안전보건자료 제작·배포

- 1)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 ,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
- 2) 제작범위 : 사업 참여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- 3) 예산지원 범위 : 자료 제작·배포 비용 등

5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

- 1) 주제 : ① 매칭 컨설팅 과제(7개) 관련, ②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등
- 2) 지원대상 : 사업 참여 지원기업 대표 및 근로자(모기업 제외)
- 3) 예산지원 범위 : 교육비

6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/W(플랫폼) 구축·운영

- 1) 주제 : 산안법 및 중대법 관련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 등
- 2) 대상 : 사업 참여 중소기업

7 안전보건진단

- 1) 주제 :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
- 2) 대상 : 사업 참여 중소기업(모기업의 사내협력사는 제외)
- 3) 진단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(건설분야 제외)

8 근로자 휴게시설

- 1) 지원종류(TYPE) :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
 - ※ 지원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)를 충족하여야 함
- 2) 대상 : 사업 참여 중소기업(대기업의 사내협력사는 제외)

9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

- 1) 대상 : 사업 참여 중소기업(모기업의 사내협력사는 제외)
 - *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21 「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」 보유 사업장에 한함
- 2) 측정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

10 기타(상기 과제·물품 외)

- 1) 지원결정 :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
- 2) 기타 :
 -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료 등 통보(공단→대기업)
 - 상기 1~6번 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“예산지원 범위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활동수행에 필요한 사항(항목)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

